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31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회의정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	2212466	정부	'25.08.28.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2025.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 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4370	이해민의원	'25.11.18.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6.0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 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3996	황정아의원	'25.11.07.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6.0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 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5463	최수진의원	'25.12.19.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6.02.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0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	-------	------------	---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6.03.10.)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 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100조의2 신설).
-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 마.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세분화함(안 제119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21조제2호”를 “제2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안전관리규정”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 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을 “핵연료물질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제51조 후단 중 ““핵연료물질사용자”로”를 ““핵연료물질사용자”로, “운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하는 자에”를 “출입하는 사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 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범위 및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를 따르는 행위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

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나.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제111조제1항제8호 중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06조제2항”을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의2 중 “여부”를 “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 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5.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및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 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검사)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

제47조(검사)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해방지조치

3. ~ 4.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 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 ⑧ (생략)

<신설>

<신설>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방사선관리구역
에 출입하는 사람은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

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범위 및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방사

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를 따르는 행위

4. (현행과 같음)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

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2.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자

② · ③ (생략)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
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
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
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용하지 않는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
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
시하는 기본교육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

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
교육

나.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
육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
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
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
에 관한 교육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

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
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
고의 접수

9.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
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 ~ 14. (생략)

14의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
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
토

15. · 16. (생략)

② ~ ⑤ (생략)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 제15조제
1항 단서(제29조 · 제34조 · 제
39조의3 · 제44조 · 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9.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
항-----

10. ~ 14. (현행과 같음)

14의2. -----

-----여부 및 제100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
계-----

1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

-----.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고한 자

를 포함한다) · 제19조제3항
(제29조 · 제34조 · 제39조의3
· 제44조 · 제51조 · 제62조 ·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조
제1항 단서 · 제28조제1항 단
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 제30조제1항
단서 · 제30조의2제1항 단서 ·
제31조제1항 · 제33조 · 제35조
제3항 단서 · 제39조의2 · 제39
조의4제3항 단서 · 제42조제1
항 단서 · 제43조(제51조 · 제6
2조 ·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5조제1항 단서 · 제52조제1
항 ·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
은 조 제2항 ·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 제54조제2항 · 제60
조제1항 단서 · 제63조제1항
단서 · 제68조의3제1항 단서 ·
제68조의4제1항 단서 · 제71조
· 제76조제1항 단서 · 제77조
의2제1항 단서 ·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 신고를 한 자

- | | |
|--|--------------------|
| 2. <u>제40조제2항 · 제50조제1항
및 제3항 · 제52조제2항 · 제53
조의3제4항 및 제5항 ·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 제59조의2제
7항 · 제61조 · 제68조제2항 ·
제70조제3항 및 제4항 · 제72
조 · 제73조 · 제74조제1항 · 제
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
반한 자</u> | <u><삭 제></u> |
| 3. <u>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5조(제
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제39조 · 제39조의8
· 제49조 · 제52조제4항 · 제58
조 · 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
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u> | <u><삭 제></u> |
| 4. <u>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u> | <u><삭 제></u> |
| 5. <u>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제42조제1항 후단 · 제60
조제1항 후단 · 제76조제1항
후단 · 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u> | <u><삭 제></u> |

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6. (생략)

7.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
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2. (현행 제6호와 같음)

<삭제>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
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
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
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
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
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

<신 설>

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
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
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
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
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
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
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
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

<신 설>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p><u>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u></p> <p>5. <u>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u></p> <p>6. <u>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p> <p>7. <u>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p> <p>8. <u>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u></p> <p>9. <u>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u></p> <p>10. <u>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u></p> <p>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u>----- ----- -----.</p>
--	--